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98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조례”를 “내규”로 한다.

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득이한 경우 주민참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

부 칙(2024. 7. 9.)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 근거 마련
-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주민참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□ 주요내용

- 제3조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”을 “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”으로 변경
- 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)에 주민참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

**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에 관한 시행내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
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**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99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에 관한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제17조제2항 중 “경영본부장, 위원은 사업본부장”을 “문화체육시설본부장,
위원은 환경복지시설본부장”으로, “경영지원실장”을 “경영기획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(2024. 7. 9.)

이 내규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－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－

□ 개정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직위 명칭 변경

□ 주요내용

- 제17조 위원회 구성의 직위 명칭 변경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100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.

제22조제2항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,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.

1. 공단 소관 본부장
4. 시민 대표자

부 칙(2024. 7. 9.)

이 내규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－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－

□ 개정이유

-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외부 위원 비율 확대 및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

□ 주요내용

- 제22조 위원회 구성 중 외부 위원 구성 비율 확대(3인 → 5인)
-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 호선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시행내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내규를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101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제17조제2항 전단 중 “환경복지본부장”을 “문화체육시설본부장”으로 하고,
같은 항 후단 중 “문화관광본부장”을 “환경복지시설본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(2024. 7. 9.)

이 내규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명칭과 및 소관 업무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변경

□ 주요내용

- 제17조 위원회 구성의 직위 명칭 변경

**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제도 시행내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
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**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102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제도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제도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중 “경영지원실장”를 “감사담당 부서의 장”로 한다.

부 칙(2024. 7. 9.)

이 내규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－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－

□ 개정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 명칭 변경

□ 주요내용

- 제2조(정의) 중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“경영지원실장”에서 “감사담당 부서의 장”으로 변경